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8년 3월 6일

나. 회부일자 : 1998년 3월 6일

3. 제안이유

-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제143회('97. 12. 16)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바 있으나
- “재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본 법인에 대한 설립부지를 출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4. 주요골자

<재산의 취득>

-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택지개발지구내)
 - 규 모 : 3,305.9m²(1,000평)
 - 시 기 : '98상반기
 - 취득가액 : 2,975,310천원

<재산의 처분>

-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출연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택지개발지구내)
 - 규 모 : 3,305.9m²(1,000평)
 - 처분시기 : '98상반기
 - 취득가액 : 2,975,310천원
 - 출연기관 :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 이사장

5. 검토의견

충청북도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이는 재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사유가 발생하여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 해결하여 주는 지원체제의 구축과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택지개발 지구내의 부지 1,000평(3,305.9m²)을 매입하여 재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 부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 부

-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